

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09호(2019. 7. 4.)
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017호(2020. 2. 19.)
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164호(2022. 9. 29.)

시점(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- 115호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21조, 제23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『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』, 『검정 및 재검정기준』 및 『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』(이하, “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”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4. 7. 17.

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

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

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·재검정을 받은 제품은 동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재검토키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

[참고]

[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] 제·개정 내용 요약

□ 제정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09호(2019.7.4.) 주요 제정 내용

-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·검정기준 마련
 -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준 반영

□ 개정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017호(2020.2.19.) 주요 개정 내용

- 기준전압이 500 V 초과 1,000 V 이하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·검정기준 마련
-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$\pm 1.0\%$ 에서 $\pm 2.5\%$ 로 변경
-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준전류 구간 추가(13A-10A-4A)
- 오차성능 평가 시 충전 케이블 손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등

□ 개정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164호(2022.9.29.) 주요 개정 내용

- 부품 변경시 형식승인 변경 적용가능 항목 확대 및 신고 면제 조항 신설
- 형식승인 신청시 케이블 길이를 범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충전량 표시 정확도 향상(0.1 kWh $\rightarrow$ 0.01 kWh)
- 기준 전류 자율화 및 시험순서 규정 삭제 등

□ 개정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115호(2024.7.17.) 주요 개정 내용

- 오기 수정, 문구의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
- 교류(AC) 및 직류(DC) 충전기 등급(계량 허용오차) 세분화
 - * 교류(AC) : 0.5급(± 0.5), 1.0급(± 1.0)
 - 직류(DC) : 0.5급(± 0.5), 1.0급(± 1.0), 2.5급(± 2.5)
- 형식승인 변경시 계량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 간소화*
 - * 소프트웨어(SW)의 단순 기능 변경 시 : (旣 SW 식별 후 변경승인 $\rightarrow$ (改) 신고사항으로 완화